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김진희 의원 등 16명으로부터 2016. 11. 16. 제출되어 11. 21. 자로 기획 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임.

1. 제정이유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안산시지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방법을 정함.(안 제4조)
- 적십자사 봉사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하여 재난구호, 사회봉사, 보건 의료 등 활동에 헌신·봉사하는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에 대한 조직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안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제2호의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로 여겨짐.
- 또한, 안 제3조에서 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조문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1. 16. 제출되어 11. 21.자로 기획행정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임.

1. 개정이유

- 관할 구역 조정 및 동 명칭 변경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산시 관할 구역 조정과 동 명칭 변경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안 제2조제3호, 별표 1).
 - 동 명칭 변경 : 사1동 → 사동, 사2동 → 사이동, 사3동 → 해양동, 고잔1동 → 고잔동, 고잔2동 → 중앙동
 - 관할 구역 조정에 따른 동 명칭 변경 : 원곡본동 → 원곡동 / 신길동, 원곡1동 / 원곡2동 → 백운동
- 지역보건소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 및 소관업무 인용 조항 정비(안 제12조 및 제14조).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하부행정기관 명칭 변경(안 별표1).
 - 본오1동 주민센터 → 본오1동 행정복지센터, 월피동 주민센터 → 월피동

행정복지센터, 와동 주민센터 → 와동 행정복지센터, 선부3동 주민센터
→ 선부3동 행정복지센터

3.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안산시 관할 구역 조정 및 동 명칭 변경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역보건소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 및 소관 업무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동주민센터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2016.10.19.부터 11. 8.(20일간) 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는 등 본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1. 16. 제출되어 11. 21.자로 기획행정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임.

1. 개정이유

- 「산업재해 예방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재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사업을 위해 안전도시협의회 존속기한 연장하여 사

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전도시실무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를 통해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관련 법령 변경(안 제7조)
- 안전도시실무위원회 위원 관련 법령 변경(안 제15조)
- 안전도시협의회 존속기한 관련 법령 변경(안 제16조)

3.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의 조문별 검토 결과,

먼저, 안 제7조제1항의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중 “제11호 산업재해예방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하려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 예방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나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예방 센터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은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 안 제15조제2항에서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의 위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은, 실무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 및 수당 예산 증액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 안 제16조에서 협의회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려는 것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안전문화 진흥과 안전도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관련 각 기관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정책 수립 및 평가, 상호협력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전도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취지로써 전문가로 구성되어 심의기능을 하고 있는 안전관리 심의위원회와는 그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고 있다는 집행부 의견에는 공감하나, 이는 안전도시협의회 개최실적

등 역할을 검토한 후 존속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조문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1. 16. 제출되어 11. 21.자로 기획행정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임.

1. 개정이유

- 최근 예측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 되며, 재난의 규모도 확대됨에 따라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여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이 강조되는 실정임.
- 이에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방재단의 임무를 화재·폭발·화학물질 유출·교통 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확대하고, 방재단 단장의 불합리한 선임방법을 개선 하며, 방재단 사무실에 상근하는 간사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 재난 예방 활동 및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자격 및 선출방법 관련 법령 변경(안 제4조)
- 사회재난 증가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임무 관련 법령 변경(안 제7조)
- 지역자율방재단 간사 수당 지급 근거 관련 법령 변경(안 제9조)

3.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의 조문별 검토 결과,

먼저, 안 제4조제2항에서 단장 선출방법을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에서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자율방재단 대표 2/3이상 참석과 참석대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로 개정하려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 되며, 재난의 규모도 확대됨에 따라 방재단장의 자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보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단장 선출에 간선제를 택하고 있는 시·군은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7개시·군뿐인 점을 감안한다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 간선제를 택하고 있는 시군현황

김포시.포천시 : 자율방재협의회 회원 / 오산시.파주시 : 단체단원대표 및 읍면동대표

평택시 : 읍면동 대표 / 남양주 : 읍면동대표 및 대표가 추천하는 1인 / 부천시 : 시방재단원

○ 안 제7조제2항의 방재단의 주요 임무에 “사회재난과 관련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등”을 신설하려는 것은, 최근 화재, 폭발, 붕괴사고, 감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역방재단의 업무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재난까지 포괄하여 활동범위를 넓히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9조제8항에서 방재단의 재정적 지원 범위에 “방재단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에 상근하는 간사의 근무수당”을 신설하려는 것인 바,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간사의 근무수당을 지원경비에 명시한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이 방재단의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 단원들의 보험비, 체육행사비, 교육비, 자문비, 운영비 중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단원 활동비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임.

○ 다만,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비 보조금 지급관련 2016. 7.18. 국민안전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나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2항과 같이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령 소관 부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국민안전처(자연재난대응과)에서는 운영비 지원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지역자율방재단에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임을 보고 드림.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1. 16. 제출되어 11. 21.자로 기획행정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임.

1. 개정이유

- 숫자 나열식 등 명칭을 지역의 정서를 반영한 개성 있는 명칭으로 변경해 자긍심을 높이고, 원곡동 일원에 대한 관할구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조정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 명칭 변경
(사1동→사동, 사2동→사이동, 사3동→해양동, 고잔1동→고잔동, 고잔2동→중앙동)
- 원곡동 일원에 대한 합리적인 동 경계 조정 및 동 명칭 변경
(원곡본동 → 원곡동·신길동, 원곡1동·원곡2동 → 백운동)
- 초지동 관할구역 중 폐지된 원곡동 675~721, 산85~산89 지번 삭제

○ 신설동과 통합동에 대한 주민센터 소재지 명기

(원곡본동을 원곡동과 신길동으로 분동하고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각각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55(원곡동) 및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8(신길동)으로 변경하고 원곡1동과 원곡2동을 통합해 백운동으로 변경하며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91(원곡동)로 변경)

○ 읍면동의 복지허브화 단계적 추진에 따른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를 병기

3.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숫자 나열식의 동 명칭을 해당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정서를 반영한 개성 있는 동 명칭으로 변경해 자긍심을 높이고, 원곡동 일원에 대해 관할구역을 생활권 중심의 합리적인 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

○ 행정동 관할구역 지번 중 폐지된 지번을 삭제하고, 신설동 및 통합동에 대해 주민센터 소재지를 명기함과 아울러 읍면동의 복지허브화 단계적 추진에 따른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병기하려는 개정안인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유화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2016. 11. 16. 제출되어 11. 21.자로 기획 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임.

1. 제정이유

○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과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성교육 등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 인성교육의 적용대상을 정함.(안 제3조)
-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인성에 대한 핵심가치·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정함.(안 제6조)
- 인성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된 조례안으로 2016.11.8.부터 11.14.까지 6일간의 입법예고, 집행부 의견청취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음.
-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학교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여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조 및 제15조에서는 인성교육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법 제20조에서는 전문인력양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우리시에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부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므로, 학생의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수행토록하고 시에서는 일반시민으로 한정하여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경기도 인성교육지원 조례」는 학생을 제외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경기도내 인성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7개시군 임.
- 또한, 「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므로 “효”의 개념에 인성교육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중복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따라서, 우리시 차원에서 본 조례안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인성교육 정책, 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되는 내용과 차별화된 사업을 담아내야 하며, 교육프로그램 개발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1. 16. 제출되어 11. 21.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임.

1. 개정이유

- 세입 징수포상금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5/100) 신설.(안 제4조제7호)
- 임기제공무원이 징수하는 건당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1건당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및 조항 재정비(안 제5조)
- “계약직공무원”의 명칭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용어의 정비(안 제2조제2호, 안 제5조제2호)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서식)
- 인용조문 “제47조”를 “제8조”로 변경(안 제7조제1항)
- 불필요 조문 삭제(제13조 삭제)

3.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의 조문별 검토 결과,

먼저, 안 제4조제1항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기준에 “결손처분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은, 결손처분된 체납세 징수는 일반 체납세 징수와 비교해 볼 때 많은 노력이 필요한 바, 공무원의 사기 제고를 위한 취지로 판단되며, 경기도내 시·군 중 3개시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 본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성남시·용인시 : 징수액의 100분의 6 / 평택시 : 징수액의 100분의 10

- 안 제5조에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건당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은 포상금 상한액을 높임으로써 고액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내 7개 시·군에서 건당 상한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임기제공무원 포상금 상한액】

(단위 : 만원)

구 분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평택시	구리시	연천군	비고
1건당 상한액	200	100	100	100	100	100	150	

- 안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려는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별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있으며, 시 법무담당부서에서 포상금은 별도의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없는 조례로 보고 필요 없는 조례로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 적정한 조치라 여겨지며, 기타 조문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1. 16. 제출되어 11. 21. 자로 기획행정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임.

1. 개정이유

- 안산시 공수의 조례를 상위법인 「수의사법」 및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수의의 위촉범위 관련 법령 변경(안 제2조)
- 공수의의 업무 관련 법령 변경(안 제3조)
- 공수의 업무보고 관련 법령 변경(안 제6조)

3.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의 조문별 검토 결과,

먼저, 안 제2조제1항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수의사의 범위를 넓게 하려는 개정안은, 「수의사법」 제21조제1항 전단에서는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에서는 시장에 위촉할 수 있는 수의사의 범위를 상위 법률보다 좁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함.

- 안 제3조는 우리시 조례와 상위법의 공수의 업무 범위가 상이함에 따라 상위법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 안 제6조제2항에서 공수의 당월 업무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는 기한을 “다음달 5일”에서 “다음달 10일”로 개정하려는 것은, 「수의사법 시행 규칙」 제22조에서 공수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매월 그 추진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배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적정한 조치라 여겨지며, 기타 조문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안산시 작은도서관(안산다문화, 모두어린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1. 16. 제출되어 11. 21.자로 기획행정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작은도서관(안산다문화, 모두어린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임.

1. 제안이유

- 안산시 지역주민의 생활권역에서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안산다문화도서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17. 3. 2. ~ 2020. 3. 1.(3년)
- 시설명 :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등 2개소
- 안산다문화, 모두어린이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구 분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
건물연면적	75.9m ²	134.4m ²
위탁기관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위탁기간	2014. 3. 2. ~ 2017. 3. 1. (3년)	2014. 3. 2. ~ 2017. 3. 1. (3년)
직원현황	3명 (관장 1명 외 2명)	2명 (사서 외 1명)
운영시간	09:00 ~ 18:00 (휴관 : 월, 법정공휴일)	09:00 ~ 18:00 (휴관 : 금, 법정공휴일)

나. 위탁내용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원곡동)
- 위탁기간 : 10년(2017. 3. 2. ~ 2027. 3. 1.)
※ 재위탁 기간 : 2017. 3. 2. ~ 2020. 3. 1.(3년)
- 시설규모 : 연면적 75.9m²(외국인주민센터 지하1층)

- 위탁사무 :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련 사무 일체
- 운영인력 및 예산 : 3명 97,544천원(시비 100%)
 - *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위탁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 15(원곡동)
- 위탁기간 : 10년(2017. 3. 2. ~ 2027. 3. 1.)
 - * 재위탁 기간 : 2017. 3. 2. ~ 2020. 3. 1.(3년)
- 시설규모 : 연면적 134.4m²(구. 원곡본동주민센터 2층)
- 위탁사무 :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련 사무 일체
- 운영인력 및 예산 : 2명 60,987천원(시비 100%)
 - *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위탁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다. 민간위탁 심의의 필요성

- 이주민 밀집지역인 지역특성에 맞게 외국인과 지역주민에게 효율적인 다문화 서비스 제공과 도서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서관 및 다문화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 필요

3.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안산시 지역주민의 생활권역에서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안산다문화, 모두어린이)의 위탁기간이 2017. 3. 1.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임.

- 본 도서관은 이주민 밀집지역인 원곡동에 소재하고 있어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외국인과 지역주민에게 효율적인 다문화 서비스 제공과 도서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서관 및 다문화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업체가 선정 되어야 할 것임.